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9.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5월 30일, 황정아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9.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9.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25.9.2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황정아의원)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를 두어, 각기 경제정책과 교육·사회 및 문화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및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연구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 및 정책별로 분절되고 단기적인 성과요구로 인해 장기적 전망의 투자와 개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업무만으로는 융합적 기술투자·개발, 연구현장 근로환경 개선, 고등교육 R&D 연계 강화와 같은 산업·인력·지역혁신 등의 범부처적 과학기술 사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음.

역대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정책의 총괄 기능 강화와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에 관하여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현행 체계에 대하여,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과기부장관을 부총리로 하여 범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위상 및 기획·조정 능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를 입법에 반영하여 과기부장관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총괄·조정 대상을 현행 ‘과학기술정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으로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관련하여, 동 기구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 분야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구로,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있어 부총리보다 상위 단계의 조정기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과기부장관을 부의장으로 하여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과기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과기부장관의 과학기술 분야 총괄·조정 기능 강화라는 개정안의 취지와 일정 부분 연계되는 측면도 있어 보임.

둘째, 일부 부처에서는 부총리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고(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행 체계에서도 과학 기술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과 부처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직 효율성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산업통상자원부) 하고 있는바, 현행 체계에 따른 총괄·조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 또는 각계의 의견수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